

#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추록 Ⅱ)

1994. 6

통 일 원



< 일러두기 >

- 이 책자는 우리원이 올해초 발간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4. 1)의 제2차 추록이므로 동 법규집에 합철하여 사용하기 바람.

< 차 례 >

- 1.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
- 2. 자유무역항규정 .....21



# 1.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투자자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의 규제내용에 넣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6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94. 3. 27 정무원 결정 제13호

##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부문
4. 건설운수 및 봉사부문
5. 이밖에 필요한 부문

제 8 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서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야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품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 10 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1. 출판·보도·방송부문

## 2. 체신부문

###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경우

제 11 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에 내야 한다(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주소·직무, 외국인기업의 책임자의 이름·국적·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업종·생산품종 및 규모·총투자액·등록자본·거래은행·투자방식과 기간·주요생산 기술공정자료·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방식, 기업의 기구·종업원수 및 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 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에 대한 국명 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 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사장·부기장·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 15 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설비

의 기술 및 수익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관리책을 첨부해야 한다.

제 17 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 19 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에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 20 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 21 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계획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기업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날자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같은 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 회사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연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제 3 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 25 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 26 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 이상
2. 총투자액 6백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 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9백만원까지는 410만원)
3.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 이상(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 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4.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은 총투자액의 30% 이상(그 가운데서 총투자액의 3천 7백만원까지는 2천 6백만원)

제 27 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 28 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유소유권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에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같은 것은 다음

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 30 조 외국인기업은 투자몫으로 들여오는 기계설비를 대외상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기계설비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31 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 안에 해야 한다.

1.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자본의 15% 이상되게 하여야 하며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이 끝난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2 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전액을, 그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

제 34 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

## 제 4 장 생산 및 유통

제 35 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기업등록신청서에 밝힌 조업 예견날짜 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을 밝히고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에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

결하여야 한다.

제 36 조 경영활동은 승인받은 기본규약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자체로 만들어 지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37 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할 수도 있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해야 한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무용품과 경영용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제 38 조 외국인기업이 투자품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 39 조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의탁하여 할 수 있다.

제 40 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 상품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기술봉사요금 포함). 지대 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 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 제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

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실현하지 말아야 한다.

제 41 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정부기

제 42 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 해야 한다.

제 43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부기 계산을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조선원을 접수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44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 돈자리와 외화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외화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산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45 조 외국인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연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외국인기업을 동결하는 해의 결산연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동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46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47 조 외국인기업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 데만 쓸 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제 48 조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분기의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분기 다음달 15일 안으로,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2개월 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연간재정부기 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윤 및 분배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 등 계산표 같은 것이 포함된다.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부기검증 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 49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운영과정에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0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 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 51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때까지).

제 52 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 일군, 또

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 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 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

## 제 6 장 노력관리

제 53 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54 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 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55 조 채용한 공화국의 노력을 계약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 56 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규정에 따른다.

제 58 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 59 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 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 60 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61 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62 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2%에 해당하는 자금
2. 종업원 500명 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3. 종업원 1,000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 제 7 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 63 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64 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심사승인기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 65 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66 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증명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을 경우

제 67 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 68 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 해산을 공개하고 채권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9 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70 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 71 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 72 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 73 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

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4 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채무취소 등록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 제 8 장 감독 통제 및 분쟁해결

제 75 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 76 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1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 법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 77 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제 78 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 79 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제 80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자유무역역항규정



# 자유무역항규정\*

##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 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제 3 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 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선박세·짐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 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 안의 제도와 질

---

\*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감독기관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경, 통행검사, 세관 검사, 위생검역, 수의검역,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점은 해당검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검역을 한다.

**제 8 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라 한다)의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 제 2 장 항 출입

제 10 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출입구와 입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 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입 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실거나 부릴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 11 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 13 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 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항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 때는 항가박지 또는 부두에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를 받는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안내원이 지지 않는다.

제 14 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 제 3 장 항 이용

제 15 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작업 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실이 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계약서에 짐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 16 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짜,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17 조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가격을 받지 않는다.

제 18 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패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 19 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진다.

제 20 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 21 조 다른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 22 조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한다.

제 23 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연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항연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 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한다. 항연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연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25 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무선기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기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

제 26 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법검찰기관에 의해 당 문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억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관에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 27 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 28 조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